

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 
공화국 정부 간의 중조 국경 하천 공동 이용  
관리 분야에서 조상 협조할 데 단란 협정

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조 국경 하천의 공동 이용 관리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친선 협조를 강화하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협정을 체결한다.

제 1 조

체약 쌍방은 중조 국경 하천 이용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.

중조 국경 하천 이용 공동 위원회 (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함)는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한 수석 대표 1 명과 대표 4 명으로 구성된다.

제 2 조

위원회는 중조 국경 하천의 이용과 관리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 해결한다.

- 1 위원회는 중조 국경 하천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조직된 개별 전문 기구 (이하 개별 전문 기구라고 약칭함) 등에서 합의되지 않는 문제들을 토의 해결한다.
- 2 위원회는 개별 전문 기구 혹은 셋개 전문 기구들의 사업과 관련된

- 문제들을 필요에 따라 직접 토의 해결할 수 있다.
3. 위원회는 개별 건진 기구들의 사업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제들을 토의 해결한다.

### 제 3 조

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쌍방이 합의한 시점에  
시 진행한다.

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대인 일종의 제의가 있을 때 상대방은  
이의 응하여야 하며 회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5일 이내  
소집되어야 한다.

회의 소집을 제기하는 일방은 타방에 회의 날짜, 장소를 제기하여야  
하며 동시에 회의 안전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조

쌍방은 필요에 따라 대표 외에 약간 명의 관제 일'군을 위원회  
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.

### 제 5 조

1. 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작성하며 결정  
서에는 쌍방 수석 대표들이 서명한다.
2. 위원회 회의 결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3. 각 건진 기구들은 위원회 회의 결정서에서 자기 부문의 해당한 사  
합들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
제 6 조

중조 국경 하천 리용 공동 위원회의 량측 수석 대표 간에 체결되는 연락, 홍보 및 실무적 문제의 처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중조측은 안동에, 조선측은 신의주에 연락처를 두며 연락 책임사를 상주시킨다.

제 7 조

쌍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의에 기초하여 본 협정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.

제 8 조

본 협정은 조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0년간 유효하다.

기한 만료 1년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도 본 협정의 재기결 의면으로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10년간 더 연장된다.

본 협정은 1964년 5월 5일 평양에서 체결되었으며 중국군과 조선군으로 각각 2부씩 작성된 이 두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중화 인민 공화국

정부 전권 대표

耿一凡

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

정부 전권 대표

홍 위 호